

학부모회/학부모-교사회(PA/PTA) 연례 선거 안내

학부모회/학부모-교사회(PA/PTA) 선거 요약

- [교육감 규정 A-660](#) (A-660)에서는 각 학교의 학부모회/학부모 교사회(PA/PTA) 임원 구조를 명시하여 학부모들의 권리가 명확히 확립되도록 하였습니다.
- 이러한 A-660에 의하면 각 PA/PTA는 매 학년도 마지막날이 되기 전까지 연례 PA/PTA 임원 선거를 완료하여, 여름방학 중은 물론 가을에 새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해당 학교에 PA/PTA 조직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특히 A-660에서는 모든 PA/PTA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며, 이러한 임기는 각 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. 따라서 PA/PTA 임원선거는 매년 치러져야 합니다.
- PA/PTA는 공정하고 비편향적인 방법으로 임원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하고 수용적인 방침을 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각 PA/PTA는 자체 내규에 후보 모집, 후보 지명, PA/PTA 임원 선출 등을 다룬 상세한 임원선출 방식을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.
- 각 PA/PTA는 반드시 내규에 명시된 선출 절차-후보 모집, 후보 지명 및 PA/PTA 임원 선출 절차 등-를 따라야 하며 모든 선출절차가 A-660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대부분의 내규에는 후보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선출 절차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A-660는 PA/PTA가 내규를 개정하여 기타 선출절차를 실시할 수도 있게 허가하고 있습니다.
- PA/PTA 임원 선출에 관한 각종 자료와 템플릿은 [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](#).
- PA/PTA는 소속 회장위원회나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.

PA/PTA 임원선출 일정 확정 및 공지:

- 연례 PA/PTA 임원선거는 반드시 학년도 마지막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.
-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매 학년도 4월 1일 이전에 연례 PA/PTA 임원선거 일자 및 시간이 통보되어야 합니다.
- 만일 학교장이 4월 1일까지 PA/PTA 회장으로부터 연례 선거 일정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였을 경우, 학교장은 PA/PTA 회장에게 선거 일정 제출을 요청해야만 합니다.
- 학교장의 요청 후 7 역일 이내에 PA/PTA 회장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, 학교장은 반드시 모든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선거 일정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.

(뒷면)

- PA/PTA는 선거 공고를 모든 학부모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. 필요할 경우 모임에 관한 공고문은 번역되어야 합니다.
- 모든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는 우편, 학생편에 전달, 이메일 전화, 문자 등이 있습니다.
- 임원선거 공고문은 선거 회의일 10 역일 이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.
- 학교장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는 각 사람이 PA/PTA 회원인지 확인하여 선출권 유무를 입증하고 선거 결과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.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학교장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.
- 새로 선출된 PA/PTA 임원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을 대리하는 기타 교직원과 협의하여, 선거 확인 양식(Election Certification Form)을 작성해야 하며, 이 양식은 [여기](#)서 보실 수 있습니다. 학교장 또는 학교장을 대리하는 기타 교직원은 본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선거결과를 입증합니다.
- 만일 선출된 회장이 해당 학교 대표로서 회장위원회(Presidents' Council)에 나갈 의사가 없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, PA/PTA 내규의 절차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.

PA/PTA 선거 후속절차:

- 선거가 이뤄진지 5 역일 이내에 학교의 PA/PTA 선거 결과 및 PA/PTA 필수임원(회장, 기록담당 서기, 회계)들의 명단과 연락처가 학교-학부모 리더 연락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합니다.
- 학교-학부모 리더 연락 정보 시스템에는 SLT 멤버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. 따라서 SLT 학부모 멤버를 선출하였을 경우, 이들의 정보 역시 입력하도록 합니다.
- 임기를 마친 임원들은 자신들의 임기동안 수집된 학부모들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기록물을 반드시 후임 임원들에게 인계해야 합니다.
- 임기를 마친 운영위원회 임원들은 학부모 연락처 등의 PA/PTA 기록 사본을 따로 간직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기록의 인계는 선거 후 가장 빠른 실행가능 일자에 반드시 교내에서 학교장 입회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.
- PA/PTA에서는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, 집계용지, 출석기록표 및 선출회의 회의록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.

더욱 상세한 정보 및 지원:

- [교육감 규정 A-660](#) (A-660)에서는 각 학교의 학부모회/학부모 교사회(PA/PTA) 임원 구조를 명시하여 학부모들의 권리가 명확히 확립되도록 하였습니다. A-660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: <http://schools.nyc.gov/RulesPolicies/ChancellorsRegulations/default.htm>
- PA/PTA 임원 선출에 관한 각종 자료와 템플릿은 [이곳](#) 그리고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: <http://schools.nyc.gov/Offices/FACE/filesandresources.htm>
- PA/PTA는 소속 회장위원회(Presidents' Council)나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. 회장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교육청의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지원실(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: FACE) 웹사이트 <http://schools.nyc.gov/Offices/FACE/default.htm>를 참고하시거나 이메일 FACE@schools.nyc.gov로 문의하십시오.